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48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김용태 · 임종득 · 김성원
윤상현 · 김대식 · 김선교
이종배 · 김승수 · 조은희
고동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수의 사업자와 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동시설 같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u> <u>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 ·</u> <u>휴양마을사업을 육성 · 지원하</u> <u>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u> <u>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u> <u>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u> <u>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u> <u>범위에서 농어촌체험 · 휴양마</u> <u>울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u> <u>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 양여하</u> <u>거나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u> <u>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을</u> <u>대부 · 양여 또는 사용 · 수익하</u> <u>게 하는 경우 그 내용 · 조건</u> <u>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u> <u>조례로 정한다.</u>